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 운영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 6. 4.(화) ~ 6. 12.(수)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 마포구 의회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회운영 위 원 회	[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 장덕준 [위원]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마 포 구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신준호	송미희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고
2019.6.7.(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증인 선서, 질의·답변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구의원과 의회 역할·기능 및 의정활동 홍보 철저
- 지역언론사 기사 통제 관련 방안 마련
-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구의원이 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및 능력 배양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작년 지역신문 홍보비가 건당 50만원으로 연간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요즘 지역신문에 우리 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음. 최근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음. 지역신문 홍보 예산에 비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볼 때 아쉬운 부분임. 지역언론사 기사 통제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의회 홍보용품으로 구매한 기념 액자 제작이 잘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내고장마포 프로그램으로 의회에 오는 초등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던데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구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구의회를 불신하고 감시하여 여러 형태의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체 의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음.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를 되찾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대민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을 위해서는 사를 버리는 구의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주기 바람.
- 일부 동료의원의 의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원윤리강령을 적용시켜 징계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함과 더불어 복잡한 집행부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고 의원 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기 바람.
- 집행부의 느슨한 분위기를 개선시켜 진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들이 노력해주기 바람.
-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들이 앞장서 일해야 함. 의원이 잘하려면 의회 직원들의 능력이 중요함. 집행부 직원들과 견주어 직원들이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음.
- 집행부는 홍보 건수가 매우 많아 지역신문에도 구정홍보가 활발한 데 비하여 의회 홍보는 보여지지 않음. 구의회와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구의원들의 역할과 의원들이 뛰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홍보해주면 좋겠음.
- 의회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의회와 구의원을 보며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포구의회가 되면 좋겠음
- 의회사무국 철문과 벽에 의회 홍보란을 만들어 사진 게시하는 등 의회사무실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음.

- 다목적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되었으면 좋겠음
- 옛말에 정약용의 「사의재」 (四宜齋) 라는 말이 있음. 마땅히 조심해야 할 네 가지 덕목으로서 “생각은 올바르게(思), 용모는 단정하게(貌), 말은 세 번 생각한 후에 하고(言),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動)” 는 뜻으로 구의원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함. 또한 「삼사일언」 (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마디 말을 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라는 것임. 구의원들은 어디서나 주시의 대상이므로 신중한 말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구의원이 되어 의회 의상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음.

나.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의회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9년 7월 31일까지 의장(의회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